

붙임 2)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내 1층 카페테리아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고객 및 직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친절서비스) 공공시설내의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자 준수사항) 사용인은 카페테리아를 운영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 상품의 종류 및 가격) ① 사용인은 사용기간 개시전까지 카페에서 취급할 음료 및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공사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부정·불량제품의 경우 우리 공사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② 판매 상품의 가격 책정은 관내 및 인근 시·군의 유사품목 가격 또는 권장 소비자가격에 준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 하에 정한다.

③ 상품의 종별 및 가격,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등을 모든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물을 게시 및 부착하여야 한다.

④ 모든 판매제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은 즉시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사용인은 운영일 및 시간 등은 반드시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에서 지정 통보한 휴무일에는 휴무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 및 청결유지) 사용인은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설 및 집기를 수시로 살균·소독 관리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 발생에 대한 보상) 사용인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 등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인은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무를 진다.

제7조(시설관리 및 경비부담) ① 사용인은 카페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전기, 상하수도, 가스, 온수 사용 등에 대한 각종 공과금 및 제세금 일체를 부담하고, 카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인이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카페 내부시설(커피머신, 기자재, 인테리어 등) 및 주방집기 등은 일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어린이 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어린이 친화적인 색상 및 디자인을 반영하여 인테리어 시공하여야 합니다.

※ 천장, 벽면, 주방에는 조명 및 별도의 입체적인 인테리어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내부·외부 간판의 경우, 어린이비전센터 C·I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시설 일체는 계약의 종료된 시기에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도난 및 손괴방지) 사용인은 카페 시설과 물품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도난, 손괴 등의 발생 시 공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인·허가 사항) 사용인은 카페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등을 사용개시 전일까지 완료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대(사용·수익)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인이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부작용 포함)가 연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사용인에 의하여 공사의 명예가 크게 손상하거나, 이용객에게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4. 카페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민원이 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기타 사용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보고의무) ① 사용인은 카페운영에 관한 민원 발생 시 3일 이내 대책을 강구하여 서면으로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카페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을 두고자하는 경우에는 종사원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관리 및 원상복구) 사용인은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 훼손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인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그 종료와 동시에 일체의 시설물이 원상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하여야 하고, 우리 공사 담당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 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제한) 어린이비전센터의 운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운영일수 변경, 운영 시간 증·감등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나 운영기간 연장 등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사용자는 전대(사용·수익)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22년 월 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